

##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”을 “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내연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함으로써”를 “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“자동차정비사업자”란”을 ““자동차정비 사업자”란”으로 한다.

1. “자동차정비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지역산업”을 “자동차정비업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지원대상”을 “지원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”를 “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,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”을 “자동차정비업

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“자동차정비사업자”를 각각 “자동차 정비업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</u></p>	<p><u>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 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 술 개발로 <u>내연시장이</u>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<u>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</u> <u>지원함으로써</u>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“<u>자동차정비사업자</u>”란 「자 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 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 <u>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을 규정함으로써</u> <u>자동차정비업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자동차정비업</u>”이란 「<u>자동 차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12조에 <u>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 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</u> <u>을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자동차정비 사업자</u>”란 ---- --.</p>

2. 3. (생략)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자동차정비사업자
2. 종사자

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4. 자동차정비사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
5.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-----  
----- 자동차정비업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지원대상) -----  
지원-----  
---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,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- <삭 제>
- <삭 제>

제5조(지원사업) ----- 자동차정비업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자동차정비업 -----  
-----
5. ----- 자동차정비업-----

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 
는 사업

-----  
-----

##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동차정비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,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, 자동차전문정비업,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.
2. “자동차정비 사업자”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.
3. “종사자”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

차정비사업자,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동차 점검·정비,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
2.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
3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
4.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
5.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